#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퍼스트」(조합원 취소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Ж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재당첨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낭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6개월		없음	음 미쯔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6.19.(수)	24.07.01.(월)	24.07.02.(화)	24.07.03.(수)	24.07.09.(화)	24.07.15.(월)~ 24.07.17.(수)	24.07.20.(토)~ 24.07.22.(월)

[사업지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동상로35
[분양사무소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205, 1층
[세대수]	총 442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84세대

# Ι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동별 사용승인(24.03.04)이 완료된 후분양 아파트며, 보존등기 이후 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이전등기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
- 본 아파트는 입주자에 대한 대출 알선 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며, 잔금은 계약일로 부터 3개월 이내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청약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u>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u>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ଅଟମ୍ୟ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 <b>6개월</b>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sup>2</sup>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b>500%</b>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트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일반공급	!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구르8명/콘턴8명 구분 없위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르냐ㅇㅂ	- 프피크 ㅇㅁ시 단ㅇㅇㅂ에 띄릅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1702 1711 76-1 20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afe.daum.net/ulsanonyangbali))에 공 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 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П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9.(수)**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 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울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4.07.01.(월)	24.07.02.(화)	24.07.03.(수)	24.07.09.(화)	24.07.15.(월)~ 24.07.17.(수)	24.07.20.(토)~ 24.07.22.(월)
방법		■ (PC·모바일) 청약홈(09: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기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택과-20066 (2024.6.1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동상로 35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층, 지상 28층~29층 / 5개동 총 442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9세대 (기관추천 9세대, 다자녀가구 13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조합원 취소분 84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 │- 유상옵션 설치세대의 품목 및 가격에 대한 상세내용은 "X.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해당세대 계약자는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잔금 완납 후)
- 공급대상

Ш

FII				주	택공급면적(	m²)	기타 게이		-1101				특별공급 세대수						0141 7 7	최하층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일만공급   <u>-</u>	우선배정 세대수		
2024000025	01	068.6576	68	68.6576	23.1294	91.7870	29.0226	120.8096	43.0920	84	9	13	16	3	8	49	35	1		

###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약식표기)	68	합 계
	국가유공자	2	2
기관추천 특별공급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2
기원구선 국결중由 	장애인	2	2
	중소기업 근로자	3	3
다자녀가구	1 특별공급	13	13
-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16
노부모부엉	· 특별공급	3	3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별공급 8		8
ិ បំ	계	49	4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丑								
주택형	구분 층별	층별	해당	총		분양가격		계약금(20%)	잔금(80%)
(약식표기)	1 t		세대수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가	계약시 (2024.07.20.)	입주시
		2층	1		95,961,538	306,638,462	402,600,000	80,520,000	322,080,000
	101동	3층	2	442세대 중 	95,961,538	320,518,462	416,480,000	83,296,000	333,184,000
68	102동 103동	4층	3		95,961,538	334,408,462	430,370,000	86,074,000	344,296,000
00	104동	5 ~ 9층 10 ~ 25층	12	조합원 취소분	95,961,538	348,288,462	444,250,000	88,850,000	355,400,000
	105동			95,961,538	362,168,462	458,130,000	91,626,000	366,504,000	
		26층 이상	14		95,961,538	376,048,462	472,010,000	94,402,000	377,608,000

# IV 특별공급

구분			내용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	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						
		구분	처리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b>당첨자발표일</b>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b>당첨자발표일</b> 이 늦은 당첨건은 <b>부적격</b>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b>부적격</b>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_ 기과츠처 / 다자녀가구 / 시호브브 /	생애치ᄎ 트별고급 · 므즈태세대구성워	 Q거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외소 입구자보입중고월 면제 특별중급 유명별도 신청자의 정확공성 자격표건을 갖추어야 압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	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	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힌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1,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2	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	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통장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7	<b>내월</b>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	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	순위자(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자격요건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	축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	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b>700만원</b>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b>1,000만원</b> 500만원								
	│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	기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	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	5함						

#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b> 하는 <b>무주택세대구성원</b>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b>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b>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b>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b>								
				_	부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고				
		100	·   E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3명 2명	40 35 <b>25</b>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2명 1명	15 10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당첨자	세대구성(3)	5 -	3세대 이상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선정방법			10년 이상	20	문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20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				
			1년 이상 ~ 5년 미만	10	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l L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b>울산광역시</b> 에 입주자모집공 <mark>.</mark>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1년 이상 ~ 5년 미만	5	- ^ C & ¬^^.¬=^^^^ / 기단이고, 또는 포.¬=^^^포 / 기단이어, 구포전의 경구 시골경기인인 인제를 예정   - 봄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 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	통본이나 가족	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대혼의 경	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IV-3

구분			내용					
대상자	<ul>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li>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li> </ul>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단계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 소 <b>득구분</b> 신생아 우선공급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b>내용</b>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워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2단계	(15%) 신생아 일반공급 (5%)	세대의 월영균모두에 전된도 도시른도자 가구현구을 월영균모두의 100% 이야한 문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당첨자	4단계	(55%) 일반공급 (15%)	(무구 모구 모득이 있는 경우 120% 이야, 한 구구 중 1한의 모득은 100% 이야여야 함)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선정방법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기타지역 거주자 <b>(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b>					

#### ■ 자녀기준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b>5</b> 28	비율	소득금액					
소득구분		미끌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ᄎᅒᅩ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구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구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V-4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b> 하는 <b>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	트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	. <b>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b> (같은 /	네대별 주민등록표등본	분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b>한 분</b>	<u> </u>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b>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62	<b>개월</b> 경과(지역별·면적별	계치금액 이상)						
	■ 당첨자 선정 순서 : ②	①지역 → ②가점 → <b>③청</b>	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기타지역 거주자 <b>(부산광역시 및 7</b>	はみいこ スペスい					
			· · · · · · · · · · · · · · · · · · ·						
	□ ■ ②가점 : 「주택공급이	∥ 관한 규칙」별표1(가점기	데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	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질			
	모으로 판명	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음	l <mark>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mark> 3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0 120 1 11 11 22 1					
	- 가섬 산성기순 표('수	택공급에 관한 규칙」별:	#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①무주택기간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당첨자		_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공급시			7년 이상 ~ 8년 미만	16	4 DH	25			
선정방법		_	<u>0명</u> 1명	5 10	<u>4명</u> 5명	25			
	②부양가족수	35	 2명	15	 6명 이상	35			
		_	 3명	20	08 96				
	-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 입주자저축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가입기간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u> </u>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	1 + 2 + 3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	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를 합산하지 않음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u></u> 함					
		+1=1 =1 = .··· =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	정자 및 그 배우자, 피부?	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 산정					
비고	- 피부양자 및 피부양지	h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	우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틱	백기간에서 제외					
-,									
	□ ■ 반60세 이상의 직계취	뜨속(피부양사의 배우자 또	[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	게 해낭					

IV-5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 60㎡'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①소득구분		내용			

####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사업주체 참고,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맞춰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6.19.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비고

###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소득금액			
	エラナゼ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내용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순위별 정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최초 압주사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정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이야 합니다 1순위 ② 정약대급 : 해당 주택에 신청자능한 청약에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② 정약부급 : 정약부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안정급액이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③ 주백청약중합자축 : 주백청약중합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② 주백청약중합자축 : 주백청약중합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② 경약부급 : 예지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 장약부급주택청약흥합자축에 가입한 분	구분	내용										
■ 점도 임무자보건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순위 ③ 청약에급: 해당 주택에 신청자능한 청약에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에지급에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급: 청약부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급액이 에지금에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단) ③ 주택청약중합자축: 주택청약중합자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에지급에 이상인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 2순위: 에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성 울산광역시(그 밖의 광역시)  - 전용원적 132㎡ 이하 330만을 20만원 20만원  - 전용원적 132㎡ 이하 300만을 400만원  - 전용원적 132㎡ 이하 500만원 400만원  - 20만원 102㎡ 이하 500만원  - 20만원 102㎡ 이하 100만원을 700만원 400만원  - ***********************************	CII ALTI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1순위 ① 창약에급: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에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급: 정약부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급액이 예지급액 이상인 분 ③ 청약부급 등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급액이 예지급액 이상인 분 - 2순위: 예지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지축에 가입한 분	내장사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② 청약에급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에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예치급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급 : 청약부급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악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급액이 예치급액 이상인 분 ③ 주택청약중합저축 : 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예치급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급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급·청약부급·주택청약중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해급의 예치급액]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현재 신청자의 <b>청약</b> ·	<b>통장 자격요건</b> 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청악부금 : 청악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악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에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령에 한편을 가입니다. 중택형악충합저축 : 주택청악충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별 에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에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악메금·청악부금·주택청악충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악메금의 예치금액]		- 1순위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발·면적발 에지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에지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에금·정막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청약에금의 에치금액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틱	백에 신청가능한 청약이	예금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0	폐치금액 이상인 분						
변역통장 마격요검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경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	에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	한 월납입인정금역	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	'이하 주택형	병에 한힘			
[ 청약예금의 에치금액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	가입하여 <b>6개월</b> 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	계없이 청약예금·청약 <u>-</u>	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전용면적 85m'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m' 이하 600만원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400만원 250만원 2E만전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E만전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2E만전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E만전 2 성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 순서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부점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2만점 기점에 수점제 전용반업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40% 6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장목 가점상한 기점구분 점수 가검구분 점 기점장목 가점상한 1030세 이만 미혼자 또는 유주역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20 전용 120	청약통장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전용면적 102m*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점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침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침제 적용비율  당첨자 선정방법	<b>다격요건</b>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	격시를 제외힌	<u>.</u> 지역			
전용면적 135m*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주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한 가접구분 점수 가접구분 점수 가접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론자 또는 유주백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2		전용면적 85m² 0	하	300만원	25	50만원	2	2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장점자 선정방법  *****  ****************************		전용면적 102m² (	기하	600만원	40	00만원	3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당첨자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접구분 점수 가접구분 점을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5		전용면적 135m² (	기하	1,000만원	70	00만원	400만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침제 적용비율  ****  *****************************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순위: ①지역 → ②추첨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HE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합지역: 해당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당첨자 건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가분     점수     가점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당첨자 건정방법			_			1.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사 <b>(울산광역시 거수시</b>	사) → 기타시역 거수사( <b>무산광역시</b>	및 경상남도 거수	≐사)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 초과 85m'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년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신용면식별 1분위 가심	세/주섬세 식용미뉼 									
전용면적 60m² 초과 85m²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가점제		추첨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년 이상 ~ 9년 미만	<b>୯</b> ୯ଟ ପ			40%		60%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나목)			I					
		가점항목	가점상한				<u> </u>		점=			
					택자				18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_	) F	1명	10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 O ⊼ T T ★		본인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③입주자저축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가입기간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O =1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배우자	매우사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을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
	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
	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 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②부양가족의 인정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적용기준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격증기문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가입기간	
주택소유여부 및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VI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본인 신청 시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	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추가서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4.07.09.(화) ~ 2024.07.18.(목) (10일간) - 조회기간 (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4.07.0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 [표1]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VΠ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주민등록표등본(모든정보 표시)	본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모든정보 표시)	배우자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7.5	0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본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공통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서류 제출시 본인 참석만 인정,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제외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단, 다음의 경우 부양가족 불인정 · 직계존속이 업주 부양가족 불인정 · 직계존속이 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 : 파견·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기관추천특 별공급	0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갈음)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 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및 임신 주차 확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의료기관 연락처 기재 및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소 비치 - 임신의 경우 제출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다자녀가구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선택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제출
		0	주민등록표등본(모든정보 표시)	피부양 직계비속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의 친자녀가 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미등재된 경우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3년 이상),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0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피부양 직계존속	발급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선택시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자 여부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제출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하여야 함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및 임신 주차확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의료기관 연락처 기재 및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소 비치
	1	1	1		

			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 제출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만 18세이상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출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체내역)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자격득실(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전체내역 발급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분양사무소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출
		0	사실 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전년도 기준(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기준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작성시 제출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분양사무소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0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써 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개월 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 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참조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자격득실(직장·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 전체내역 발급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분리세대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전원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지 되어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소득산정 제외)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생애최초 특별공급		0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분양사무소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제출
		0	사실 증명(신고사실없음)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전년도 기준(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으로 전년도 기준 발급 불가시 전전년도)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작성시 제출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출산예정일 및 임신 주차 확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의료기관 연락처 기재 및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분양사무소 비치 - 임신의 경우 제출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제출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제출
	0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피부양 직계존속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소득산정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여부 확인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분양사무소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0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피부양 직계존속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기 확인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출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직계존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직계존속의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원 불인정
(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0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피부양 직계비속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 <sup>보</sup> 확인 -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직계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해외체류 중인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 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 또는 연간 183억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0		위임장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공급신청자의 인감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표시)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피부양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초본(모든정보 피부양 직계비속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후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인감증명서 본인  ○ 인감도장 본인  ○ 위임장 본인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sup>※</sup> 상기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함.

<sup>※</sup>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sup>|×</su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sup>※</sup> 서류 발급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날인 필요함.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으로 간주함.
- ※ 추후 구비서류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일괄 폐기처분할 예정임.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매월 신고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세무서(또는 홈택스), 해당직장		
근로자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근무처별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산정	①,② 해당직장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학원강사, 보육교사등)	①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필수)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①해당직장 ②세무서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자영업	신규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사본) ②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국민연금공단/세무서		
자	법인대표자	①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재직증명서 ③전년도 재무제표	①,②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②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직인날인)	①,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재직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단,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①해당직장/세무서 ②해당직장		
	무직자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 - 분양사무소 비치 ②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근로지	기타 ㅏ 중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명시]	①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등 ②해당직장		

<sup>※</sup>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sup>※</sup>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음.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서류제출	발급처
	근로자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소득금액 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용) 및 납부내역 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 상기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필수	<ul> <li>③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li> <li>⑤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현황에 표시 된 해당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li> <li>ⓒ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해당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li> </ul>	<ul><li>⑥⑤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li><li>ⓒ행정복지센터</li></ul>
있는경우	추가 (해당자)	<ul> <li>๗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원(*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li> <li>◉개별공시지가확인원(*소유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등)인 경우)</li> <li>⑥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li> <li>(*'위택스&gt;지방세정보&gt;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ul>	<ul><li>(๗) ⑥ 행정복지센터</li><li>(၅) 위택스</li></ul>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경우	필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	<ul><li>③대법원 인터넷 등기소</li><li>⑤행정복지센터</li></ul>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가능

	서류	루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서약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서류 제출시 본인 참석만 인정,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공통	0		주민등록표등본(모 든정보표시)	본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모 든정보표시)	배우자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정보, 세대 구성원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제출
	0		주민등록표초본(모 든정보표시)	본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본인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제출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제출 제외
	0		해외체류(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 국내기압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해외 출장자 : 파견·출장명령서 - 해외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로 채용된 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단신부임)하고 있는 경우 제출 ※ 단, 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입주모집공고일 현재 동일한 세대원 또는 미성년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 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모 든정보표시)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가점제 추가서류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0	주민등록표초본(모 든정보표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 · · · · · · · · · · · · · · · · · ·					

		0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요양시설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제외
		0	주민등록표초본(모 든정보표시)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든정보를 표시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 세)	피부양 직계비속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0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대조일은 해당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0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발급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시추가사 항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0		위임장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공급신청자의 인감 날인
사업주체 요구	0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 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함.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 ※ 주택공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일정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함.
- ※ 추후 구비서류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 VIII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Ĭ-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1				
- 1	구분	계약 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7.20.(토) ~ 2024.07.22.(월)(10:00 ~ 16:00)	당사 분양사무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205, 1층)	052) 237-0020

※ 순위내 청약신청 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잔금	BNK 경남은행	207-0119-5967-00	우리자산신탁(주)		

- ※ 공급금액 납부계좌는 별도계약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무소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홍길동'
-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 음.

####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서류유형					
구 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유의사항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단, 본인 참석만 인정,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	
공통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확인	
	0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등 ※ 분양사무소에서 현금 수납 불가	
	0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0	자격검증서류	-	- 당첨유형별 자격검증서류 일체(서류제출 기한 내 모두 제출.확인이 완료 된 경우 제외)	
		0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자격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대리인 계약시	0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주택계약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추가사항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본인 외 모두)	0		위임장	본인	- 분양사무소 비치 - 계약자 본인의 인감 날인	

	0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 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분양사무소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분실했을 경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기재금액은「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추후 구비서류의 추가 및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확인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소명기간 내 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 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 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주민등록법령 위반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0 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정당 당첨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공급 계약을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최초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 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가산세를 포함하며 , 전자수입인지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납부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 입주자의 본 주택 동 호수배정일(당첨일) 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이때 다른 주택의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관리(안내,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하고 종전 지번 기준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배치, 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분양사무소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의 당첨이 확인되거나 또는 불법전매 등 관련법령을 위반할 경우 일방적인 해약 조치와 함께 처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분양계약서 및 계약구비서류에 준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 3항 제 27호
- 본 아파트는 동별 사용승인(24.03.04)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준공 후 분양 아파트로 입주자 사전 점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경 (잔금 완납 후)
- 입주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ΙX

# 참고사항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난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6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자 및 숙인 보안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자 및 숙인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숙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체주속에부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정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설치 아니하는 패가이거나 주택이 열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 항에 따른 부적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달실시키가나 철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장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증전의 '건축보 1년 발점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하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라 업주자를 경해 또는 공매로 때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업자인으로서 보증되는 전부로 되어 법정 보다를 점심으로 함께 또는 공매로 때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2. 무적관요로서 보증되게 1호를 제고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형 및 제26조제16항제1호에 따라 업주자를 선정하고 있는 경우 11. 업자인으로서 보증되는 전부으로 3억원을 증행하여 함의 임자수학을 경해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대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조용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신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료 제1호가목2를 준용함' 12. 무주택시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당한 구택을 필환다. 이하여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 가급 발부터 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입차주택(주택법 시행된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함의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해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한산다)한 경우 12. 무주택시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업후 취득한 경우의 가격으로 모양한다 기존 취득 일반다. 이하이 하하이면 주거집은 면적이 60제곱리에 다른 조라이는 경우 14.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본 및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함의 제3호에 대상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이 전략 전략 한반다는 전략 취득 제3조에 대상하는 전략 취득 등에 2024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월부터 2024년 12월 1월부터 2024년 12월 1월부터 2024년 12월 1월부터 2024년 12월 1월

# Χ

#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 ■ 추가 선택품목 설치 세대(유상옵션)

### 1. 추가 선택품목 설치비

[단위 : 원, VAT포함]

설치 품목	동	호수	공급금액		
	101	1403, 2403, 2404, 2701, 2803			
	102	601, 702, 1002, 1701, 1702, 2501, 2502			
	103	301, 1003, 1203, 1303, 1701, 1901, 1902, 2103,			
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403, 2502, 2603, 2903	2,100,000		
	101	601, 803, 1102, 1103, 1204, 1502, 2101, 2201,	2,100,000		
	104	2202, 2601, 2904			
	105	502, 1001, 1002			
프리미엄 욕실케어+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304	3,380,000		
바가 표비가 다이/나다케어/, 데기서이트워/대청 표비가 다이/, 그그청 드게스로	103	2301	2 400 000		
발리 포세린 타일(바닥케어)+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2702	3,400,000		
즈마 마파기 ★스킨2여도,데기서이도의/대청 파네리 디어, 그그청 다게스로	104	1101, 2804	2.64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802	3,640,000		
LG오브제컬렉션+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701	5,280,000		
	101	2301			
LG휘센에어컨(2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703	5,500,000		
	104	1001			
LG인덕션+LG휘센에어컨(2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2202	6,490,000		
LG휘센에어컨(3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2602	6,000,000		
LG위엔에이진(3대)+대디적약트별(대형 포제된 다벌)+포탑형 트데드움 	104	301	6,900,000		
LG휘센에어컨(4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1303	7,900,000		
가호 음식물처리기+LG오브제컬렉션+사계절욕실팬(1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504	8,040,000		
즈마 마파가 ★스킨(어도C)에에어컨(어마). 메기서이트와(대청 파베리 디어). 그그청 다게 A로	103	2501	0.04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3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1404, 2302	8,840,000		
천장벽체 바이오도료+LG휘센에어컨(2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1	802	8,550,000		
LG휘센에어컨(4대)+사계절욕실팬(2곳)+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5	402	9,000,000		
중문 그라스텍+LG휘센에어컨(4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1401	9,200,000		
즈므 므프지 ㅊ스리ɔ@도.u.cji세에어커/ʌ대\.대리서아트워/대형 파네리 타이\.고그형 드레스르	102	1801	0.44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4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202	9,440,000		
중문 그라스텍+프리미엄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3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004	9,48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인덕션+한샘0.4(절약형)+기본구성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2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5	2002	10,070,000
LG휘센에어컨(3대)+LG오브제컬렉션+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5	2901	10,080,000
중문 그라스텍+LG인덕션+LG휘센에어컨(4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101	10,19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4대)+하이제로(탄성코트/그레이)+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1	403, 2704	10,220,000
중문 문풍지 댐퍼 초슬림3연동+LG인덕션+한샘0.4(절약형)+LG휘센에어컨(2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703	10,270,000
레이노-프리미엄절약형+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한샘0.4(절약형)+LG오브제컬렉션+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501	10,38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한샘0.4(절약형)+LG휘센에어컨(3대)+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401	10,48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기본구성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3대)+발리 포세린 타일(바닥케어)+사계절 욕실팬(1곳)+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1102	11,07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2대)+발리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발리 포세린 타일(바닥케어)+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403	11,24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프리미엄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4대)+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1	1304	11,50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2대)+LG오브제컬렉션+사계절욕실팬(1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2	1601	11,55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인덕션+한샘0.4+LG휘센에어컨(3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203	11,85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휘센에어컨(3대)+LG오브제컬렉션+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801	12,400,000
레이노-프리미엄 절약형+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기본구성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3대)+사계절욕실팬(2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5	701	12,620,000
레이노-프리미엄 절약형+한샘0.6+LG휘센에어컨(4대)+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203	12,81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천장벽체 바이오도료+LG인덕션+프리미엄 욕실케어+LG휘센에어컨(4대)+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804	14,76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인덕션+기본구성 욕실케어+LG 휘센에어컨(3대)+발리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사계절욕실팬(2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3	1503	14,99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한샘0.4(절약형)+LG휘센에어컨(3대)+발리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LG오브제컬렉션+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1401	16,560,000
레이노-프리미엄 절약형+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한샘0.6(절약형)+LG휘센에어컨(4대)+발리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사계절욕실팬(1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1	2604	16,580,000
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LG인덕션+한샘0.4(절약형)+LG휘센에어컨(4대)+가호 음식물처리기+LG오브제컬렉션+발리 포세린 타일(바닥케어)+ 사계절 욕실팬(1곳)+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5	2702	18,930,000
레이노-프리미엄+중문 문풍지 초슬림3연동+천장벽체 바이오도료+LG인덕션+한샘0.4(절약형)+기본구성 욕실케어+LG 휘센에어컨(4대)+가호 음식물처리기+발리 엔지니어드 스톤(주방상판)+LG오브제컬렉션+하이제로(탄성코트)+대리석아트월(대형 포세린 타일)+고급형 드레스룸	104	903	26,050,000

### 2.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대금 납부계좌	수협은행	1010-1741-2611	더웰홈

※ 본 아파트는 현재 동별 사용승인(24.03.04)이 완료되어 추가 선택품목이 설치된 세대는 각 세대에 설치된 추가 선택품목 계약이 기본 필수 사항임.

####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유의사항

- 지정된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명을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예시 : 101동 1502호 : '1011502홍길동' / 101동 702호 : '1010702홍길동')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빌트인 가구 매립시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빌트인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X

# 유의사항

※ 청약자 및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 ·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동별 사용승인(24.03.04)이 완료되어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분양 아파트입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본 아파트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소음방지대책을 수립 하였으나,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제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부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부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때 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무소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분양사무소,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리플렛,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완충녹지, 공원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동별사용승인 (24.03.04) 아파트로서 별도의 융자 및 대출 알선을 하지 아니함.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위탁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중도금 대출,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정구)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외국인이 상속·경매 등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화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한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 세대 내부

- 1.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2. 홍보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3. 본 아파트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됨.
- 4. 발코니 노출 배수배관으로 인한 미관 지장 및 배수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5. 침실1(안방) 발코니에 우수배수배관이 설치되어 우천 시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6. 세대내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분전함이 전기 설비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 따라 노출 설치됨
- 7. 아파트 각 세대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대피공간이 설치됨.
- 8. 발코니에 보일러, 수전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9. 본 아파트의 난방설비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세대별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배관 및 연도가 노출됨.
- 10.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1. 입주민의 인테리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기 시설물을 임의로 해체 또는 파손시 그에 다른 시설물의 기능 및 사용상의 문제는 하자보수가 불가하며, 이로 인한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은 입주자 부담임
- ┃12. 아트월 벽면에 벽걸이TV 설치를 위한 못 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전기·통신용 매입배관이 파손될 수 있으니 설치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또는 시설물안내서의 유의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람.
- ┃13. 세대 내부 고정형 가구(신발장, 침실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붙박이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바닥마루 마감재 미시공 등)
- ┃14.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이 가구 등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15.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 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16. 타일은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발생이 있을 수 있음.
- 17. 엘리베이터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용부/단지 내 환경

- ┃1.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조경·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3. 공동주택의 특성상 충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동의 저층세대는 차량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4. 단지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외부휴게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조망,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104동 남측 지하층에는 주민공동시설이 위치하여 보행자 통로, 사용상의 소음 및 진동,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6. 104동 남측에는 어린이집. 103동전면 지상층에는 경로당이 위치하며, 주민운동시설 인근에 배치된 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인접동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7. 101동 인근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에는 외부통로 설치로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8. 단지 지하주차장 램프1(104동 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이고 / 램프2(102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로 시공 됩니다.
- 9.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10. 103동 지하층에 기간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11. 단지배치 특성상 주출입구 전면의 101동부터 105동까지 단지내 도로가 경사로로 계획되어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12. 저층부 일부 구간은 석재뿜칠이며, 외벽면의 기본마감은 수성페인트로 시공되오니 이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14. 단지의 배치특성상 동별, 향별, 충별차이, 동간거리, 세대별 창호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5.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6.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놀이터, D/A(환기구),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소, 자전거보관대, 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7. 단지내 주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등 단지 내외 시설물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18.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으로 인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9. 공용시설용(주민공동시설 외) 배기시설 및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근접 세대는 미관, 소음, 바람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음.
- 20.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 천창 등의 지상 돌출물이 각동 계단 또는 지상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분양 홍보물(모형/배치도/분양카달로그 등)을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그 위치 및 크기, 마감재, 개소는 변경될 수 있고 그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여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1. 단지 및 아파트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22.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거나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가 면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기 비 라
- □23. 지하1층 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공용 전기 요금으로 부과될 예정임.
- 24. 각 동의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에 창문이 설치되는 경우 개폐가 불가한 창호로 시공됨. 단, 일부층에 한하여 개폐가 가능한 창호로 시공됨.
- 25.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26.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음.
- 27. 지하주차장 천장은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됨.
- ☑28.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라인을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29.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페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 보안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CCTV에 의거하여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31. 단지내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부대복리시설

- 1.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됨.
- 2. 부대복리시설은 관계법령(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계획됨.
- 3.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4.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음. 또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부대복리시설 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5.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로 인해 인근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 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6.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승인 도서와 상이할 수 있음.
- 7.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8. 일부 실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 학생 배치사항

1. 학생 배정 계획은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 근린생활시설

- 1.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아파트 부지와 별도의 대지 경계선으로 구획되지 않으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2.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건물관리는 근린생활시설의 수분양자들이 하여야 함.
- ┃3. 근린생활시설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 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단지 외부여건

XΙ

- 1. 본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 아파트 진·출입 도로(보도 포함), 단지 외부(경계) 도로 및 도로 선형 구조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승인변경이 수반 될 수 있고,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함.(동의 받은 것으로 간주함)
- 2. 단지 남측은 25m도로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시설 등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 혼잡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3. 단지 주변도로 및 인접대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단지 내,외부 일부구간에 조경석 및 옹벽, 자연석쌓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 조건,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 및 미관 구조물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 치위치 및 높이, 옹벽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4. 향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 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 불편, 일조, 조망, 사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5. 단지 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부동산 거래신고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자 안내

#### ■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등	
건축부문 설계기준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제7조제3항제1호)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미적용	해당사항 없음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 " " " " " " " " " " " " " " " "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조명설치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거실 콘센트 개수의 30%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본 아파트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 ~VII)으로 표기

구분	등급
0.2112g	VII

####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١	6M	2.3M	2.3M

※단지 지하주차장 램프1(104동 뒤)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이고 / 램프2(102동 앞)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
상 호	㈜계림건축사무소	㈜대림엠이씨	㈜한진엔지니어링
금 액	1,750,029,700	455,789,400	242,000,000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발리 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한양건설	주식회사 한양건설
주 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연안5길 10, 2층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
사업자등록번호	229-82-60755229	408-81-09859	408-81-09859

- **사업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동상로35
- 홈페이지: '온양발리 한양립스 더 퍼스트' 홈페이지(https://cafe.daum.net/ulsanonyangbali)
- 분양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205, 1층 (모형도 및 단위세대를 미설치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문의: 052) 237-0020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소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람.
- ▶※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